



보도 일시	(지 면) 2.3.(금) 조간 (인터넷) 2.2.(목) 12:00	-	
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책임자	과 장 임동우 (044-204-7350)
		담당자	사무관 임채식 (044-204-7354)

중소벤처기업부, 과도·불합리한 규제 신설·강화 사전 차단 -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예보제 시범 실시 -

- 각 부처 신설·강화 예정 규제 중 중요한 규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알기 쉽게 제공하여 피규제자가 모르고 지나가는 일이 없도록 안내 강화
- 대표 협·단체*와 함께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 규제영향 평가에 반영하여 과도·불합리한 규제도입 차단

*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신설·강화 예정 규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현장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예보제’를 도입, 3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규제예보제는 규제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 도입 단계에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창구를 마련, 제출된 의견을 분석·반영하는 제도로써, 미국, 영국 등 해외의 경우 다양한 형태로 도입·운영되고 있다.

◆ 주요 국가의 규제예보제 도입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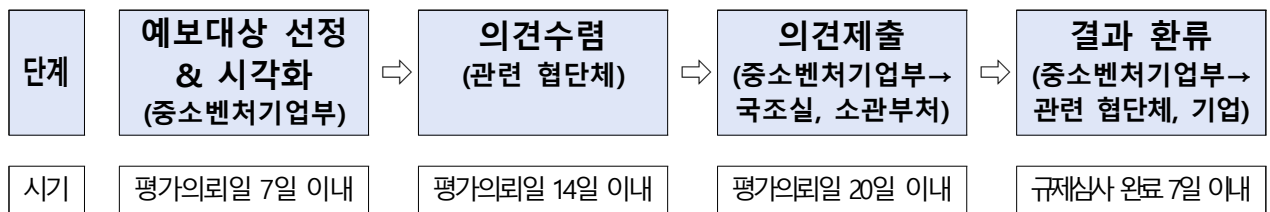
구분	미국 규제예보제 (Regulatory Alerts)	영국 소기업 검사(테스트) (Small firm Impact Test)	유럽연합(EU) 작은 것 먼저 원칙 (Think Small First Principle)
방식	규제 주요내용과 의견수렴 방법을 누리집,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쉬운 정보그림(인포그래픽)을 활용해 가공한 후 제공(Quick-Facts)	규제개혁에 참여의사를 피력한 중소기업 7000개사의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해, 전자우편(이메일) 등을 통해 규제에 대한 의견 청취	중소기업 대사(SME's envoy)를 통해 다수 기업의 의견 수집을 지원, 규제 입법 전 산업단지 내 사전 공청회 개최 의무화

우선 시범운영 대상 규제는 각 부처에서 규제 신설·강화 시 작성·공개하는 규제영향분석서를 바탕으로 연간 규제비용이 일정 금액(30억 원) 이상이거나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규제를 선정하여

생업에 바쁜 중소기업·소상공인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핵심내용 위주로 간결하게 시각화하여 제공하고 대표 협단체(중기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의견을 수렴, 주요 의견은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제도 :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중소기업에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 신설·강화를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법적근거 :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

<규제예보제 시범운영 단계별 절차>



※ 규제 신설·강화 시 각 부처는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국조실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중기 규제영향평가를 의뢰

1호 예보 대상으로는 배달료 인상 등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개별 수입이륜차 인증 대수 축소 및 확인검사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환경부 고시)을 선정, 예보를 실시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23년 하반기부터 예보제 대상 확대(정부입법→의원입법), 전용 시스템(규제예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현업에 매진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규제영향평가서를 확인하고 의견을 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규제예보제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신설·강화 예정 규제를 최소한 모르고 지나는 일은 없도록 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1

규제예보제 홍보자료

이제 규제도 **날씨처럼 예보**합니다.

“규제예보제”

시범 운영



규제예보제는 어떤 서비스인가요?

각 부처에서 신설·강화하려는 규제 중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를 알기 쉽게 시각화하여 제공하고, 현장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개인 메일이나 기관 대표 메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나요?

Reglog2009@kosi.re.kr로 메일링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시범운영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중요 규제 1건을 시각화하여 신청하신 메일 주소로 발송해 드립니다.

**규제에 대한 의견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제가 제출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나요?**

규제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소정의 양식을 작성하여 Reglog2009@kosi.re.kr로 보내주세요.
제출된 의견은 전문 연구원의 검토를 거쳐 중소기업 규제영향 평가에 반영됩니다.

관련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담당관실 044-204-7354 doedali@korea.kr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규제영향평가팀 02-6299-7937 sykim@kosi.re.kr

참고 2

예보안건 정보그림(인포그래픽)

규제도 이제 **날씨처럼 예보**합니다. 

규제예보

개별 수입이륜차 인증생략 대수 축소 및 확인검사 의무화 등

관련법령: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 입법예고 2023.01.16 ~ 2023.02.06

주요 내용

- 01 협회 회원사의 이륜차 인증생략 대수
(현행) 최대 500대 > (개정) 99대로 축소
- 02 인증 불합격 차종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후속조치 1년 내 완료
- 03 개별이륜차 시험자동차 선정 대수 변경
(현행) 수입 대수 101~300대는 5대, 301~500대는 6대 시험
(개정) 101~125대는 5대, 이후 수입차 25대 당 1대씩 증가

규제 강화에 따른 비용 예상

- 01 회원사의 인증생략 대수 축소로 인증비용 증가 예상
(현행) 약 281만원 *500대 수입 시 1대 > (개정) 약 4,215만원 *99대 5회에 걸쳐 수입
*500CC 미만 기준
- 02 인증시험에 사용되는 차량의 감가상각비 증가
(현행) 1대의 중고차 발생 > (개정) 15대의 중고차 발생

▶ 위 고시 개정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업·협단체는 중소기업연구원 규제영향평가센터(☎02-6299-7937, Reglog2009@kosi.re.kr)로 '23.2.9.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의견은 전문연구원의 검토를 거쳐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에 반영합니다.